

※ 모든 제출서류는 2020년 10월 16일 이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7자리 포함) 발행본

구비서류	발급기준	필수/해당	확인사항 및 기타사항
신분증	본인	필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필수	용도 : 아파트 계약용, 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본인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의 경우 인감도장 생략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필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필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필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해당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무주택 관련 서류	확인 사항
개인사업자 등록증 및 건물등기부등본 → 보존 등기 확인 부적격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 후 매매확인 서류 제출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목적에 의한 주택 소유
개인사업자 등록증 및 건물등기부등본 → 용도 확인	개인사업자가 근로자숙소용 주택 소유(숙소 목적 주택을 건설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 면적 확인	전용면적 20㎡이하의 주택 소유 1호 또는 1주택 보유(2호 또는 2주택 이상 제외)
부적격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멸실 또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3개월 이내 등기부등본 제출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무허가 건물확인원(해당 시·군·구청 건축과) 또는 재산세 납부 내역 등 / 항공사진(국립지리원)	무허가건물 :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만 해당